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지 제64호서식] <개정 2022. 1. 21.>

자동차 운전면허 정기(수시) 적성검사 제1종 대형 [ ] 특수 [ ] 소형 [ ] 신청서

※ 2쪽에 병력신고서가 있으므로 질의내용 확인 후 적어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3쪽 중 1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 **즉시**

신청인	성명(한글)			**사 진** 3.5㎝×4.5㎝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)
	국적	운전면허증 발급		
		실물	[ ]국문 [ ]영문	
		모바일 (희망하는 경우에만 선택)	[ ]IC카드 발급 [ ]현장 QR 발급	
	성명 (영문) 성 / 이름			
	※ 성명(영문)란은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			
	주민등록번호		운전면허번호	
	주소			
	전화번호		전자우편	

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82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도로교통공단 귀하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**3쪽**의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(여권정보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영수필증 첨부란	수수료	담 당	부 장	장 장
	「도로교통법」 제139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·공고하는 금액			

뒷면도 기재하여 주십시오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)

병력(病歷)신고서(응시자가 작성)

- 정신질환, 경련성 질환, 마약류, 알콜중독 등 -

	있 음	없 음
(1) 귀하는 정신분열증・정동장애(情動障碍)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		

(있는 경우) 병 명: 치료개시일:

치료종료일: 치료 병원:

	있 음	없 음
(2) 귀하는 경련성 질환(뇌전증)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		

(있는 경우) 병 명: 치료개시일:

치료종료일: 치료 병원:

	있 음	없 음
(3) 귀하는 마약・대마・향정신성의약품・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?		

(치료사실이 있는 경우) 병 명: 치료개시일:
치료종료일: 치료 병원:

(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) 단속 일시: 위반 행위:
단속 기관:

년 월 일

응시자 (서명 또는 인)

※ 만일 허위사실을 적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「도로교통법」제152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,「도로교통법」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.

판정관 의견	적정 [ ] 정밀검사 필요 [ ]	판정관	(서명 또는 인)

신 체 검 사 서

(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,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)

시 력			청 력 (제1종 소형은 해당 사항 없음)		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					
					상지		하지		문진결과	
양안	좌	우	좌	우	적	부	적	부	적	부
그 밖의 의사 소견					검사결과 적격 여부					

년 월 일

병 원 장 (인)

의사면허번호 담당의사 (서명 또는 인)

..... 담당의사 (인) ..... 자르는 선 .....

운전면허 신체검사서(병원 보관용)

성 명		주민등록번호	
주 소		연락처	

시 력			청 력 (제1종 소형은 해당 사항 없음)		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					
					상지		하지		문진결과	
양안	좌	우	좌	우	적	부	적	부	적	부
그 밖의 의사 소견					검사결과 적격 여부					

년 월 일

병 원 장 (인)

의사면허번호 담당의사 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 제출서류 및 업무담당자 확인사항

신청인 제출서류	1. 신분증명서(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) 2.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(3.5cm×4.5cm) 2장 3. 병력신고서(정기적성검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(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 가. 신체검사서 나.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.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. 병역판정 신체검사(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합니다) 결과 통보서 5.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(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업무담당자 확인사항	1.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「병역법」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(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종 소형의 경우 청력에 관한 정보는 제외합니다)에 관한 정보 2.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3. 여권정보(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,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

※ 운전면허증은 국문 또는 영문 중 한 가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
※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82조제1항 단서 및 제8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적성검사(갱신)기간 등의 운전면허 정보를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